

#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12월 16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 조사를 구제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, 인권보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 인권침해 조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 조사를 구제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으로 신설(안 제18조제2항제2호 신설).
- 인권침해 결정시 신중한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(안 제19조의3제2항 단서신설).
- 인권침해 조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함(안 제20조제2항).
-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 구제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인권보호관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3항 단서신설).
- 현재 비상임 위원 임기 보장을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함(부칙 안 제2조 신설).

#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

안 제18조제2항제2호는 제3호, 제3호는 제4호로 하며, 제4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”를 “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”로 한다.

안 제19조제1항 중 “호선”을 “호선(互選)”으로 한다.

안 제19조의3제2항 중 “개의”는 “개의(開議)”로 하고,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

다만,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안 제20조제2항 중 “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임용 및 지위에 관하여는”을 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,”로, “따른다.”는 “따라 임용한다.”로 하고,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, 제4항제4호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3항에”로, “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”를 “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로”한다.

다만,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.

부칙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.

#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 < 수정안 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의2(서울시인권정책회의) ① ~ ③ (생략)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⑤ (생략)</p>	<p>제7조의2(서울시인권정책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&lt;삭제&gt;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의2(서울시인권정책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(개정안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(이하 “구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(이하 “보호관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18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(이하 “구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 &lt;신설&gt; 2.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</p>	<p>제18조(설치 및 기능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 2.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 3.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③ <u>상임 보호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, 「지방 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,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</u></p> <p>2. <u>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</u></p> <p>3.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·조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</u></p>	<p>3. 그 밖에 <u>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</u>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	<p>4. 그 밖에 <u>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</u>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</p> <p>4. <u>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</u></p> <p>⑤ <u>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⑥ <u>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.</u></p> <p>⑦ <u>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19조(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)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,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,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<u>제19조(구성)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</u>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19조(구성)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u></p> <p>(이하 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② <u>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.</u></p> <p>③ <u>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하여 보장된다.</u></p> <p>④ <u>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<u>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</u></p> <p>2. <u>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</u></p> <p>3.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·조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</u></p> <p>4. <u>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</u></p> <p>③ <u>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</u></p> <p>④ <u>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	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9조의2(위원장 직무 등)</b>            ① 위원장은 <u>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         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<b>제19조의2(위원장 직무 등)</b>            ① (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9조의3(운영)</b> 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.           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b>개의</b>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<b>의결한다.</b></p>	<p><b>제19조의3(운영)</b> ① (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b>개의(開議)</b>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<b>의결한다. 다만,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b></p>
<p>&lt;신 설&gt;  <b>제20조(직무) &lt;신 설&gt;</b></p>	<p><b>제5장 시민인권보호관</b>  <b>제20조(설치 및 기능)</b>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</p>	<p><b>제20조(설치 및 기능)</b>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
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① <u>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<u>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,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.</u></p> <p>③ <u>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</p>	<p><u>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(이하 “인권보호관”)을 둔다.</u></p> <p>② <u>인권보호관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임용 및 지위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.</u></p> <p>③ <u>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(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)에 대하여 조사한다.</u></p> <p>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④ <u>인권보호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</p>	<p>② <u>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.</u></p> <p>③ <u>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(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)에 대하여 조사한다. 다만,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.</u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<u>각하한다</u>.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<u>상임 보호관이</u>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④ <u>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.</u></p>	<p>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<u>조사하지 아니한다</u>. 다만,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<u>구제위원회가</u>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신청의 내용이 <u>제1항에</u> 규정된 <u>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</u> 해당하지 않는 경우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신청의 내용이 <u>제3항에</u> 규정된 <u>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</u> 해당하지 않는 경우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</p> <p>① <u>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</u>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8조제3항 전단 중 “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”를 “감사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”을 “권한”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조(중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)</p> <p>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을 따른다.</p> <p>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p>으로, “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”를 “감사위원회”로 한다.</p>	<p>있고,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.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 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8조제3항 전단 중 “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”를 “감사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”을 “권한”으로, “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”를 “감사위원회”로 한다.</p>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    호

###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8조의 제목“(설치 및 구성)”을“(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증진을”을 “침해의 구제를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
2.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
3.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구성)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
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
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·조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
4.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③ 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
④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위원장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9조의3(운영) 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.

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9조의4(시정권고 및 후속조치)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,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,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5(구제위원회 지원)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 앞에 “제5장 시민인권보호관”을 삽입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직무)”를 “(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(이하 “인권보호관”)을 둔다.
- ②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.

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구제위원회는”을 “인권보호관은”으로, “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”를 “사항(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)에 대하여 조사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”를 “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.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구제위원회는 제1항”을 “인권보호관은 제3항”으로, “각하한다”를 “조사하지 아니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상임 보호관이”를 “구제위원회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제4호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3항에”로, “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”를 “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조사수행) ①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·문서열람·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·자료제출 및 출석·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③ 인권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21조의 제목“(보호관의 제척 등)”을“(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민인권보호관”을 “위원 및 인권보호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보호관”을 각각 “위원 및 인권보호관”으로 한다.

중전의 제22조, 제23조,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을 따른다.

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 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전단 중 “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 보호관에게”를 “감사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”을 “권한”으로, “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”를 “감사위원회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2(서울시인권정책회의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8조(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(이하 “구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(이하 “보호관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,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의2(서울시인권정책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(이하 “구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</li> <li>2.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</li> <li>3.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</li> </ol> <p>&lt;삭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</p> <p>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</p> <p>3.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·조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</p> <p>4.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⑦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<b>제19조(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)</b>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,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9조(구성)</b>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<u>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.</u></p> <p>③ <u>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하여 보장된다.</u></p> <p>④ <u>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</u></li> <li>2. <u>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</u></li> <li>3.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·조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</u></li> <li>4. <u>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</u></li> </ol> <p>③ <u>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</u></p> <p>④ <u>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 <p><b>제19조의2(위원장 직무 등)</b> ① <u>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b>제19조의3(운영)</b> ① <u>구제위원회는 월 1회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199 763 341 799">&lt;신설&gt;</p> <p data-bbox="199 1877 341 1912">&lt;신설&gt;</p>	<p data-bbox="831 311 1430 459">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.</p> <p data-bbox="831 477 1430 736">② <u>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3 759 1430 799"><b>제19조의4(시정권고 및 후속조치)</b> ① <u>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42 929 1430 1126">② <u>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,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42 1149 1430 1408">③ <u>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 data-bbox="842 1426 1430 1736">④ <u>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,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42 1758 1430 1852">⑤ <u>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3 1874 1430 1915"><b>제19조의5(구제위원회 지원)</b> ① <u>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b>제20조(직무) &lt;신 설&gt;</b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① <u>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<u>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,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.</u></p> <p>③ <u>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<u>각하</u>한다.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</u></p>	<p>② <u>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5장 시민인권보호관</b></p> <p><b>제20조(설치 및 기능)</b> ① <u>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(이하 “인권보호관”)을 둔다.</u></p> <p>② <u>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.</u></p> <p>③ <u>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(직장내 괴롭힘 사항 제외)에 대하여 조사한다. 다만,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④ <u>인권보호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<u>조사</u>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호관이</u>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<u>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</u> 해당하지 않는 경우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④ <u>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u>구제위원회가</u>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신청의 내용이 제3항에 규정된 <u>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</u> 해당하지 않는 경우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<b>제20조의2(조사수행)</b> ① <u>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·문서열람·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·자료제출 및 출석·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인권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인권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
<p><b>제21조(보호관의 제척 등)</b> <u>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·결정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1. <u>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</u></p>	<p><b>제21조(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)</b> <u>위원 및 인권보호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위원 및 인권보호관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p> <p>2. <u>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u></p> <p>3. <u>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</u></p> <p>4. <u>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</u></p> <p>5. <u>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,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</u></p>	<p>-----</p> <p>2. <u>위원 및 인권보호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3. <u>위원 및 인권보호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<u>위원 및 인권보호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5. <u>위원 및 인권보호관</u>-----</p> <p>-----</p>
<p><b>제22조(조사수행)</b> ①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<u>현장조사·문서열람·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·자료제출 및 출석·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<u>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상임 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<u>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상임 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<u>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<b>제23조(시정권고 및 후속조치)</b> ① 구제위원회는 <u>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,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

현행	개정안
<p>② <u>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,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④ <u>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,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	
<p>제24조 (생략)</p>	<p>제24조 (현행 제24조와 같음)</p>
<p>제25조(구제위원회 지원) ① <u>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들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제26조 (생략)</p>	<p>제26조 (현행 제26조와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</p>

현행	개정안
	<p>시행한다.</p> <p><b>제2조(중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)</b>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을 따른다.</p> <p>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.</p> <p><b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</b> 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8조제3항 전단 중 “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”를 “감사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”을 “권한”으로, “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”를 “감사위원회”로 한다.</p>